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배포: 일반
 2018년 12월 14일
 원문: 영어
 비공식 국문번역 초안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번역)

대한민국의 제 17, 18, 19 차 통합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¹

1. 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과 4일 개최된 제 2691 차 및 제 2692 차 회의(CERD/C/SR.2691 and 2692)에서 대한민국의 제 17 차, 제 18 차 및 제 19 차 통합 정기보고서(CERD/C/ROK/17-19)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 12월 11일과 12일에 개최된 제 2703 차 및 제 2704 차 회의(CERD/C/SR.2703 and 2704)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서문

2. 위원회는 한국이 제 17 차에서 제 19 차까지의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 대표단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임했던 것과, 대표단이 보고서 심의 시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고, 심의 후 추가로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환영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국이 행한 긍정적 진전 사항과 활동을 환영한다.
 - (a) 인신매매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2013년 4월 5일의 형법 개정
 - (b)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 (c) 2018년 2월 12일, 제 3 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수립

¹ 위원회의 제 97 차 회기 (2018년 11월 26일 - 2018년 12월 14일)에서 채택됨.

- (d) 2018년 2월 12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e) 2018년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4. 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한국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C. 우려 및 권고사항

인종차별의 정의와 법제

- 5. 위원회는 한국이 위원회의 지난 권고(CERD/C/KOR/CO/15-16)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1항과 차별의 특정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협약이 규정하고 서술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1, 2 및 4조)
- 6.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 7. 위원회는 한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현재의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히 2018년 5월 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에 도착하면서 악화된 혐오발언, 인종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관한 관념의 전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표현된 인종적 고정관념의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적 문서에서 유효한 허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칭할 때 “불법체류 이주민”과 같은 경멸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차별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제 2, 4 및 7 조)

8.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 호(2013)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iii) 난민과 현지 주민간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b)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협약 제 4 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 (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
- (d) 법령과 공적 문서를 점검하여 “불법체류 이주민”의 용어사용을 철폐하고 장래 사용을 삼갈 것

위원회는 또한 사회일반 안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 9. 위원회는 2012 년 고용허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다음의 장애를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a) 사업장변경 횟수의 제한; b) 한국 영토에서 체류가 허가되는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 c) 가족결합을 할 수 없는 점; d) 비자종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제한으로 장기 또는 영주 체류 허가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을 막고 미등록 체류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점 (제 5 조)
- 10. 위원회는 한국이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여타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a) 가족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b) 사업장변경을 못하게 하는 제한을 없애고; c)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연장하고 그리고; d) 다른 비자종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농어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고 제조, 건설 및 축산업에는 많은 경우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위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여전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민들이 어업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보고에 따르면 이익이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만 분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노출된 물리적 및 언어적 학대, 노동착취 및 괴롭힘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 1, 5 및 6 조)
12.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제 30 호(2005)에 비추어, 위원회는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고용 규정이나 관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제에 대해 필요한 개정을 하여 비시민에 대한 노동조건과 노동요건상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비롯하여 한국이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의 차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침해시 적절한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로 제재가 가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 근로감독 또는 여타 기관에 의한 방문, 위반사항, 제재, 구제 및 처벌에 관한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과 비호신청자

13. 한국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난민심사관 교육을 진행하고, 신속, 투명, 공정한 난민심사절차를 도모하며,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지하는 바이나, 위원회는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비호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한국어와 영어, 단 두개의 언어로만 고지되고, 그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호신청자가 여전히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안들에서 난민심사면담이 비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른 난민들에 비해 특정 지역 출신의 난민들의 재정착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 5, 6 조)

14.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심사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직원에 의한 지원을 받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에 대한 명백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계속해서 난민신청자들과 일하는 출입국 직원들과 통역인들에게 인권 연수를 제공하고, 이를 강화할 것 역시 권고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한국이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모든 결정을 공정하고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인종이 아니라 오롯이 보호적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민

15. 위원회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상해 혹은 특정 사안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출입국 직원 및 경찰에 의한 폭력적인 단속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조(MTU)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의 추방까지 이어졌던 단속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때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억압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들의 체류지위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 범죄사실을 보고하기를 주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한국이 노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권리를 포함하여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인권 연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이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가 추방의 두려움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한국이 피해자가 그들의 체류지위와 관련한 편견없이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 혹은 추방된 이주민의 수 그리고 과도한 폭력이 사용된 사례에 있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수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7.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 63 조에 의거하여 즉시 추방될 수 없는 이주민의 구금이 매 3 개월 마다 내려지는 법무부 승인에 의하여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구금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들의 구금에 대하여 행정적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의제기가 독립적 기관이 아닌 법무부에 의해 심사된다는 점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당사국의 이민법제가 아동의 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 2, 5 및 6 조)

18. 위원회는 즉시 추방될 수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금의 적법성이 정기적으로 독립적 기관에 의해 심사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 63 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비호신청자들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며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사국이 이주민의 구금에 대한 기간 제한 상한을 설정하고 구금 대신 구금의 대안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당사국이 아동/미성년의 구금을 피하고, 법에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외국인 여성의 보호

19.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및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특별법들이 2014 년에 개정되어 이주여성의 사법접근권과 지원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인 이주여성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젠더기반폭력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여성들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방의 위험이 남아있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단념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 5 조, 6 조)

20.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적절한 법적, 의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 (b)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미등록 이주여성이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가할 것
- (c)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로서 이주여성들이 구제조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21. 위원회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주민")이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한국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결혼이주민"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전형적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한국이 "결혼이주민"이 이혼 후 한국 국적의 자녀와 함께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우려한다. (제 5 조)
22.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젠더와 관련된 측면에 관한 일반논평 제 25 호(2000 년)을 상기하면서, 한국이 모든 "결혼이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없는 적용을 확대하여 모든 "결혼이주민"들이 동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결혼이주민"들이 혼인관계 종료 사유, 자녀양육여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민"들이 이혼절차와 양육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에 국한되고,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부터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이 제외되는 것에 우려한다. (제 2 조, 5 조)
24. 위원회는 한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 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인신매매

2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한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E-6 비자로 입국하는 이주여성과 무비자로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강제 성착취 상황에 관한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면제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두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피해신고를 꺼려하는 것에 우려한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낮은 인신매매 처벌률에 우려를 표한다. (제 2, 5 조 및 6 조)

26.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부합하는)을 채택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입법을 알리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
- (b)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당국에 피해진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최소한 구제절차가 완료될때까지 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기초생활보장을 허가할 것
- (c) 인신매매 사건을 전문가적인 태도로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보장할 것.

위원회는 한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할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출생등록

27. 위원회는 외국인들이 국적국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 출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이 체계적으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국적 부와 외국 국적 모 간의 혼외 출생자의 국적 취득절차는 모의 출신국이 발행한 여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따라, 해외 여권 발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 되며, 여러 사회적 지원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제 1, 2 조 및 5 조)

28. 비국민 차별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 30 호 (2004)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출생등록이 넓은 범위의 인권 향유를 위한 기본전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국적 부와 외국 국적 모 간의 혼외 출생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를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한국이 1961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에 대한 접근

29. 위원회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교육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권리는 있지만, 입학 허가는 학교 교장만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학 거부 또는 부모가 아동을 입학시키는데 실패하여 여러 이주아동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대안학교에 이주아동을 입학하는 관행은 차별적이며,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 1, 2 조 및 5 조)
30. 위원회는 한국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국이 아동의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이주민 공동체 및 학교 교장을 포함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이주아동들의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이 일반학교의 이주아동 입학률을 증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

31. 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보다 이주민의 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다수의 이주민들이 어떠한 기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이주민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제도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제 1, 2 조 및 5 조).
32.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위원회는 또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모든 이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b)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범죄피해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제도 적용 요건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33. 위원회는 한국과 상호보증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다수의 외국인이 그러한 협약이 없는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1, 6 조).

34. 형사사법 체계의 관리와 기능에 있어서 인종차별의 방지에 대한 일반권고 제 31 호 (2004)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이 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이 특히 범죄에 취약한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어, 관할 내 있는 모든 사람이 효과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D. 기타 권고사항

기타 조약의 비준

35.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조약, 특히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체에 직접적인 연관 조항이 있는 조약 등 국제인권문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이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과 가사노동자에 관한 ILO 협약 제 189호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후속 조치

36.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 33 호(2009)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이 더반 검토회의의 결과문서를 고려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철폐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프리카계인들을 위한 세계 10년

37. 유엔 총회 결의안 68/237 에 비추어, 위원회는 한국이 다음 정기보고서에 아프리카계인들을 위한 세계 10 년의 틀 안에서 위원회의 아프리카계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제 34 호(2011)를 고려하여 채택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와의 협의

38. 위원회는 한국이 다음 정기보고서 준비와 이번 최종견해의 후속조치에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일하는 이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자문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

협약 제 14 조에 따른 선언

39. 위원회는 한국이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의 권한을 승인하는 협약 제 14 조 상의 선택적 선언을 할 것을 장려한다.

협약 제 8 조의 개정

40. 위원회는 한국이 1992 년 1 월 15 일 제 14 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되고 총회가 결의안 47/111 으로 인준한 협약 제 8 조 제 6 항의 수정사항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공통핵심문서

41. 위원회는 한국이 2015 년 제출한 공통핵심문서를 환영하지만, 국제인권조약상 보고 가이드라인, 특히 국제인권조약상 보고(HRI/GEN/2/Rev.6, chap. I)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핵심문서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러한 문서에서 42,400 단어 분량 제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UN 총회 결의안 68/268).

최종견해 관련 후속조치

42. 협약 제 9 조 제 1 항 및 절차규정 제 65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한국이 이번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로부터 1 년 내에 본 최종견해의 16 항(노동자의 단결할 권리)과 28 항(출생등록)에 관한 이행 여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히 중요한 항들

43. 위원회는 한국이 위 권고 중 제 6 항(차별금지법, 형법 개정, 인종차별을 동기로 한 범죄 관련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방안), 제 10, 12 항 (고용허가제 및 노동법에서의 비시민 차별 개정), 제 18 항 (이주 구금), 제 26 항 (포괄적 반인신매매법) 및 제 30 항(의무교육)의 권고사항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한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며,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정보 전파

44.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고서가 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대중이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 보고서 등에 관한 최종견해 역시 그와 유사하게 공식언어 및 기타 적절한 상용언어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차기 보고서의 준비

45. 위원회는 제 71 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한국이 2022 년 1 월 4 일을 기한으로 제 20 차 내지 제 22 차 정기보고서를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기된 모든 논점을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다룰 것을 권고한다. 총회 결의안 68/268 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이 21,200 단어 분량 제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